

6월 1일(수)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

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

근로자는

사전투표기간(5.27.~ 5.28.)과 선거일(6.1.)에 모두 근무할 경우
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는

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,
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
선거일 전 7일(5.25.)부터 선거일 전 3일(5.29.)까지
인터넷 홈페이지, 사보,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

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**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